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29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강준현 · 김문수 · 황명선
김한규 · 민병덕 · 이건태
박정현 · 한민수 · 이용우
송옥주 · 조인철 · 이훈기
박민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용카드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최근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비용이 낮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이 이러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할인,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달리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이 결제수단 간 비용 및 혜택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분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EU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외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가격 인하나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결제비용의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라는 현행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결제수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가맹점수수료 차액의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결제수단의 종류, 가맹점수수료 차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경제적 이익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결제수단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제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 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 다. <단서 신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 ----- ----- ----- ----- --.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 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수수 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 용하는 자에게 가맹점수수료 차액의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 지 아니한다.
② ~ ⑦ (생략) <신설>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결제수 단의 종류, 가맹점수수료 차이 의 산정기준과 방법, 경제적 이 익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